

2023년 은평구 아이돌보미 4차 정기모집 공고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모집분야	인원	업무	지원자격	
은평구 아이돌보미	00명	시간제 (일반형, 종합형) 및 영아종일제 아이돌봄	필수	※ ①~③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지원 가능 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생후 3개월 이상~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이 가능한 신체·정신 건강한 활동 희망자 ③ 은평구가족센터의 일정에 따라 바로 수행이 가능한 자
			우대	① 취업 취약 계층 및 경증장애인 (복지카드 소지자) ② 자격증 ¹⁾ 소지자(보육교사, 유치원 교사, 초중등교사, 의사, 간호사) ③ 만 36개월 미만 영아돌봄 가능한 자 ④ 은평구 전 지역, 전시간대 활동 가능한 자
			지원 불가	①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치 않는 자 ② 구직급여 등 아이돌봄 활동 등의 제약이 있는 자 ③ 신청서류 허위 제출자

2. 모집일정

구분	지원기간 (서류접수)	서류전형 발표일정	인적성검사	면접일정	최종합격자 발표일정
모집일정	10.04.(수)~10.18.(수)	10.20.(금)	10.24.(화)	추후공지	추후공지
	※ 인·적성검사에 동의하시는 경우 면접전형 참여가 가능하며, 검사결과는 참고용으로 비공개 됩니다. ※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, 방문 및 전화 접수는 불가합니다.				
인터넷 접수 방법 (https://care.idolbom.go.kr (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) 접속 → [지원 및 양성] 클릭 → [모집공고] 클릭 (은평구 공고 확인 후 지원) → 필수자료 작성 후 첨부(아이돌봄신청서, 아이돌봄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, 등본) → 지원					
※ 모집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지됩니다.					

3. 신청 시 제출서류

- 가. (필수)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(홈페이지)
- 나. (필수)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(홈페이지)
- 다. (필수)주민등록등본 1부 (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)
- 라. (해당자)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) 1부
- 마. (해당자)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- 바. (해당자)경력증명서 1부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

4. 선발 후 제출서류

가. 채용신체검사서 1부 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)

※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(홍부방사선 검사, B형간염 등) 및 정신질환,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

나. 급여통장(국민은행) 사본 1부

다. 3개월 내 찍은 반명합판 사진 2장

라.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위한 서류

마.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

5. 선발 후 양성과정

구분	양성·보수교육		현장실습		신입오리엔테이션	
	일정	장소	일정	장소	일정	장소
최종 합격자	추후공지	추후공지	추후공지	추후공지	추후공지	은평구가족센터 (1센터)
	※ 양성교육대상자(80시간), 보수교육 대상자 (16시간) 교육 이수 ※ 교육비: 양성교육비 20만원(양성교육 대상자) 현장실습비 2만원(보수교육대상자)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 (단, 양성교육비의 경우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환급됨) ※ 위의 일정은 센터 및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	

6. 직무 및 급여

구분	내용
공통	가.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나.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비상약품 비치 요청,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응급처치 2) 서비스제공기관에 해당 내용 발생 시 보고 다. 아동학대 예방 및 성범죄 등 신고의무 수행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 경우에는 즉시 신고 2)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신고
영아 종일제	가. 돌봄대상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나. 활동범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이유식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,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2)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(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, 서면, 통화, 문자메세지 등 통해 전달
시간제	가. 일반형(기본형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돌봄대상: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 2) 활동범위: 학교, 보육시설,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(조리를 통한 식사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. 단,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) 나. 종합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돌봄대상: 생후 3개월 이상~ 만12세 이하 아동 2) 활동범위: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추가(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,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, 청소·결레질하기,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) ※ 만 36개월 미만 영아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함

급여	<p>가. 돌봄수당(기본시급): 9,630원(2023년 기준)</p> <p>1) 주휴일, 야간·휴일·연장 근로, 연차유급휴가, 경력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계수당 추가 지급</p> <p>2) 서비스유형, 아동 추가 등에 따라 기본시급에 가산하여 추가 수당 지급</p> <p>나. 명절수당</p> <p>1) 기본상여금: 연 20만원 (1회 10만원) 지급</p> <p>2) 가산상여금: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수에 따라 경력가산상여금 지급</p> <p>다. 기타</p> <p>1)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(단,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, 산재보험만 가입)</p> <p>2)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적립금 적립</p>
----	---

7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시행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나. 선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,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라.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

8. 문의

- ※ 은평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☎ 02-376-3752 으로 전화주세요.
- 평일 월~금 9:00 ~ 18:00 (12:00~13:00 점심시간)

- 붙임 1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(결격사유) 1부
2. 아이돌봄 신청서 1부
3.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부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 끝.

■ 아이돌봄미 결격사유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)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출처: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72